

“사업전환승인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확대”

- 세세분류간 업종전환 기업에게도 인력재배치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-

- 한·미 FTA 비준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업종·품목으로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지원시책이 다양해지고 그 지원대상도 넓어진다.
- 중소기업청(청장 홍석우)은 올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전환기업의 인력재배치시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기존의 소분류간 업종전환에서 세세분류간 업종전환으로 확대됨에 따라, 세세분류간 업종전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업전환 승인기업도 모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.
-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전환 추진기업이 기존업종 근로자의 60%이상을 신규업종에 재배치할 때, 그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액의 3/4을 1년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, 사업전환 승인기업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만 제출하면 된다.
- 중소기업청(청장 홍석우)은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게 신기술·신제품·신공정개발 R&D 출연 지원(30억원), 사업전환 경영·기술·재무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(30억원), 설비구입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(1,100억원)과 더불어,
- 사업전환 정보제공시스템(www.kerc.or.kr)을 통해 업황정보 및 손쉬운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며, 사업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희설비의 거래알선 정보를 유희설비거래알선 사이트(www.findmachine.or.kr)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.
-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연계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히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, 향후에도 사업전환실태조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-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·접수하면 된다.

고용유지지원금(인력재배치시) 세부 내용

□ 「고용유지지원금」(인력재배치시) 개요

○ 지급요건

-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인력재배치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,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

○ 지급내용

-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/4을 사업주에게 지급
- ※ 근로자 1인당 4만원/일 한도로 1년간 1,46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

○ 지급기간

- 인력재배치일로부터 1년간 지급

□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

○ 고용유지지원금(인력재배치시) 업종전환 인정범위 확대

구분	(현행)	(개정후) : 신설
업종 전환 범위	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으로 한정	다만, 「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 관한특별법」 제 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혹은 세세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

* (예시) 소분류 내 업종전환 인정이 필요한 세세분류 업종기타식품제조업(154) : 설탕 제조업(15420), 커피가공업(15491)

□ 시행령 개정 기대효과

-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인력재배치시 업종전환의 범위에 『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』에 따른 사업전환승인기업이 포함됨에 따라, 세세분류간 사업전환 기업도 혜택을 받게 됨

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사업 안내

1. 사업목적

-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거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지원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도모

2.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상시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자로서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자(www.kerc.or.kr 참조)

〈사업전환의 개념 및 유형〉

구분	사업전환내용	전환비중
업종전환	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·폐기→새로운 업종 전환	완전전환
업종추가	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	30%이상
품목추가	현재 영위업종내에서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여 기술, 시설, 공정 등이 바뀌는 경우	30%이상

- * 제조업 ↔ 서비스업간 업태전환도 포함
- * 업종분류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(5단위), 서비스업은 소분류(3단위)
- * 품목분류 : 별도의 제조업 품목분류표(www.kerc.or.kr)에 의함(제조업에 한함)
- * 사업전환 실시기간 :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(1회에 한해 1년이내에서 연장 가능)
- * 전환비중 : 전체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전환업종 및 품목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

3. 지원시책

구분	지원내용
계획수립지원	무료 자가진단 서비스(www.kerc.or.kr) 및 계획수립 상담 및 보완
컨설팅	지원내용 : 사업구조개편, 신제품 개발 등 사업전환 실행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한도 : 2,400만원이내 보조(컨설팅의 70% 이내)
자금	지원대상 :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공단 자금심사기준 부합기업 지원내용 :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연 4.82%(기준금리) *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: 시설 8년(거치 3년), 운전 5년(거치 2년) 대출한도 : 업체당 3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기술개발(R&D)	'08년 지원규모 30억원, 과제당 1억원 한도 75% 출연(4월 공고예정)
세제지원 등	관련법률에 따라 세제지원(조세특례제한법), 고용안정 및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(고용보험법), 유희설비 유통정보 제공 등

4. 신청방법 및 문의

- 신청접수 및 문의 :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(www.sbc.or.kr)
- 제출서류 :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서 등(www.kerc.or.kr)

사업전환 지원절차

중소기업	중소기업청 사업전환지원센터	비고
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	→ 상담 및 접수 ↓ 진단 및 타당성평가 (현장실사)	전환계획 수립지원, 자금지원타당성평가 병행
사업전환 착수	→ ○ 사업전환계획승인 (중소기업청) ○ 용자지원결정	
사업전환계획 추진	→ 연계지원 • 용자 지원 • 컨설팅 지원 • R&D 출연 • 고용·세제지원 ↓	○ 중기청 사업전환계획 심의위원회 ○ 중진공 용자심의 위원회
	→ 사후관리	